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1가단43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323611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1가단4394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진광석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정대규

변론 종결2023. 9. 13.

판결 선고2023.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45,728,612원, 피고 C은 19,212,9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자이다.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B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매입하고 차액을 남겨 재매각하는 방식의 공동투자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 B은 김천시 F 대 1,217m² 외 1필지(이하 'G동 토지'라 한다), 구미시 H 전 1,350m²(이하 'H 토지'라 한다), 경북 군위군 I 창고용지 927m² 외 5필지(이하 'J리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공동투자를 하였다.

G동 토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K 대구지방법원	2013. 4. 26.	L, M, N 명의로 취득
H 토지	김천지원 O 대구지방법원	2013. 9. 26.	피고 C 명의로 취득
J리 토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P	2013. 11. 26.	원고 명의로 취득

나. 원고는 2017. 12. 6. 위와 같은 공동투자에 따른 작성일 무렵까지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피고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차용증

일금 42,500,000원

위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8. 3. 30.까지 변제하고 위 기일 경과 후 이율은 매월 0.6%를 지급하기로 하고, Q 토지 관련 대출금은 채무자(원고)가 전액 책임지고 변제한다(대출금

30,000,000원정).

다.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810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 7. 7. 원고가 피고 B에게 20,195,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1. 7. 7.까지는 연 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2022. 6. 29. 원심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원 42,500,000원 중 원고가 합계 28,400,000원을 변제한 사실¹⁾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돈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원금의 변제에 순차로 충당한 나머지 20,186,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2. 6. 29.까지는 연 7.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나316671). 위 판결은 2022. 7. 20.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① 원고는 피고들이 J리 토지의 매각대금 중 피고 C이 배당받을 금액을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채무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 C 본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횡령의 혐의로,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전부 반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원인으로 다.항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사기의 각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는 2023. 4. 5. 피고들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23. 6. 22.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0, 15 내지 23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H 토지 공동투자 관련 채무액이 10,000,000원이고 정산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데²⁾, 이는 원고가 2014. 7. 16. 피고 B에게 44,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 채무가 존재한다고 착오하여 위와 같이 정산한 것이다. 만일 원고가 위 44,000,000원의 변제 사실에 관하여 착오를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이후 피고 C이 J리 토지에서 가장채권자로서 배당받은 19,212,974원(= 집행비용 4,193,751원 + 배당금 15,019,223원)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액에서 공제하며, 원고가 2018. 3. 21. 송금한 7,600,000원 등을 별지 기재 표 '부당이득금 산정내역'과 같이 공제하면, 오히려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45,728,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J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어야 하는데, 피고 C이 가장채권자로서 19,212,974원을 배당받아갔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먼저, 피고 B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관련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을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는데에서 더 나아가 추가 정산을 구하는 취지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므로, 관련 민사판결의 소송물과 원고의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동일하다거나 선결, 모순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민사판결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을 다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판결은 이 사건 차용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차용증에 기한 피고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에서뿐 아니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을 다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당시 44,000,000원의 변제 사실을 착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착오를 전제로 한 취소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 자체는 다투지 아니한 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한 이상 그 효력이 있어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산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즉, 별지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순번 14번까지는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정산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이 J리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9,212,974원 및 피고 C이 2018. 3. 21.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7,600,000원을 피고 B에 대한 채무액에 변제 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관련 민사판결에서 위 각 추당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피고 C은 위 7,600,000원을 송금받은 같은 날 원고에게 9,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별지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순번 15, 16번은 채무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고, 앞서 본대로 이후 17번부터 마지막 항목인 19번까지는 채무액에서 변제 충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이 J리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19,212,974원 및 2018. 3. 21. 송금받은 7,600,000원은 피고 B의 채무에 변제 충당될 금원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 피고 B이 수령한 금원도 아니어서 위 각 금원을 피고 B이 얻은(부당)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 B에게 그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먼저, 피고 C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관련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민사판결은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다툼으로 피고 C이 당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상계항변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위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상계항변이 아니라 변제항변이 주장된 점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갑 제15호증, 갑 제20호증의 2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 C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2017차156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4.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이에 기하여 피고 C 명의로 J리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결과 2017. 12. 11.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신청채권자인 피고 C에게 15,019,223원이 배당되고, 위 피고가 집행비용 4,193,751원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 C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및 그 집행비용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에게 원고에 대한 정산의무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남진

별지

- 1)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9. 1. 21. 500,000원, 2019. 3. 20. 250,000원, 2019. 4. 22. 250,000원, 2019. 5. 20. 250,000원, 2019. 9. 21. 350,000원, 2019. 10. 24. 300,000원, 2019. 11. 21. 250,000원, 2019. 12. 23. 250,000원, 2020. 3. 13. 500,000원, 2020. 3. 26. 6,5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20. 3. 26. 피고 B의 세금 19,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 2) 원고 주장하는 세부 산정 내역에 대하여는 2023.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면 하단 표 참조.